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78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대마의 범위에서 헴프 제외	3

I. 개요

1.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78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7. 6.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고위험 마약류에서 제외하였음. 같은 해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설치하여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칸나비디올)에 대해 합법적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뇌전증 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마

약류로 일괄하여 규제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마의 성분 중 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대마의 범위에서 헴프 제외

- 대마의 범위에서 헴프(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 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를 제외함(안 제2조제4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u>제품은</u> 제외한다. 가. ~ 라. (생략) 5. ~ 9.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제품 및 헴프(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 -. 가. ~ 라. (현행과 같음) 5. ~ 9. (현행과 같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대마(大麻)는 대마초(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¹⁾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혼합물질·혼합제제를 의미하며, 대마에는 향정신성 작용을 하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 -Tetrahydrocannabinol, 이하 “THC”), 의학적 유용성이 확인되고 있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

□ 현행법은 대마의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①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인 종자,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등을 사용하여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경우, ②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하는 경우에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1) 나무에서 분리되는 끈끈한 진을 의미하며, ‘대마 수지’란 대마초에서 얻은 진액을 의미함.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품명	화학명 또는 구조식
1	칸나비놀(Cannabinol)	6,6,9-Trimethyl-3-pentyl-benzo[c]chromen-1-ol
2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Δ^9 -Tetrahydrocannabinol)	(-)-(6aR,10aR)-6,6,9-Trimethyl-3-pentyl-6a,7,8,10a-tetrahydro-6H-benzo[c]chromen-1-ol
3	칸나비디올(Cannabidiol)	2-[(1R,6R)-6-isopropenyl-3-methylcyclohex-2-en-1-yl]-5-pentylbenzene-1,3-diol

- 그런데, 2018년 WHO는 CBD 사용과 관련하여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킬 만한 증거가 없다며 2019년에 UN에 규제 완화를 권고하였고, 2020년 유엔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는 공식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안전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대마(cannabis, cannabis resin)를 마약류 지정 Schedule I(위험도가 높은 마약)은 유지하되, Schedule IV(Schedule I중 특히 위험하고 치료 목적의 유용도가 낮은 물질)에서 제외한 바 있음.
- 또한, 미국, 캐나다, EU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THC 농도가 극히 낮은³⁾ 대마를 “헴프”로 규정하여 산업용 또는 의료용 연구 등의 활용을 허용하고, 그 효능을 입증하는 등 헴프의 산업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가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THC 농도가 0.3% 이하인 대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대마를 활용한 의료 등 목적 연구 및 산업화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마약류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헴프를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최근 헴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긍정 18.3%, 부정 58.8%로 부정인 태도가 많으며, 헴프 합법화에 대한 반대원인으로는 “환각 성분이 있는 마리화나의 불법 유통 우려”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남⁴⁾.

3) 미국 THC 0.3% 이하, 영국 0.2% 이하 등 국가별로 기준은 상이함.

4) 「2025년 대국민 헴프 인식 여론조사 결과보고서」(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026.2.)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유래 성분이 식품, 화장품 등의 마케팅에 활용될 경우에는 청소년 등이 마약 성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어 마약 입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대마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햄프를 일시에 산업 전 분야에 대하여 합법화하기보다는 의료용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며,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 및 활용을 허용하되 안전관리체계를 함께 규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⁵⁾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의안번호 2217773,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769,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물질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대마’도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는 점, 대마는 천연물로 마약류 성분(THC 등)의 조성·함량 등에 가변성이 있는 점,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한약사회) 뇌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유용한 CBD (칸나비디올) 성분 활용도를 높이고, WHO 권고 및 글로벌 규제 완화 흐름에 맞추어 헴프(Hemp)를 마약류 규제에서 분리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이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음.
- (대한한의사협회) 개정안에 찬성함.
- (한국대마산업협회) 개정안에 찬성함. 다만, THC 함량 0.3% 기준을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방법, 검사시기, 건조방법, 함량 산정방법, 공인시험기관 및 검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헴프에서 생산된 추출물·가공품의 법적 지위와 재배과정에서 THC 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의료용 대마의 규제 완화를 넘어 산업용 헴프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확대하고, 경북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성과를 제도 설계에 활용하는 한편, 법률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후속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04